

의안번호	제 76 호
의 결 연 월 일	2022년 10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 
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변종오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2년 09월 일

#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변종오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6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 : 2022년 9월 30일  
발의자 : 변종오, 이동우, 김종필,  
김호경, 박지현, 박진희,  
유재목

## 1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의 위임 근거 조문을 구체적으로 밝히고,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 지정방법에 관한 규정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「자동차관리법」상 위임 근거 조문의 구체적 명시(안 제1조)
- 나.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에 관한 내용 보완(안 제2조)
- 다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등(안 제3조, 제4조, 제6조)

## 3. 조례안 : 붙임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협의 : 충청북도 균형건설국 교통정책과
- 라. 조례안 예고 : 예고대상(의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)

##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충청북도” 를 “「자동차관리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” 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선정시는 공개모집” 을 “선정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의 방식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제1항에 따른 대행자” 를 “도지사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도지사가 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” 를 “도지사” 로, “이전” 을 “전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2항” 을 “도지사는 제2항” 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「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」 제8조” 를 “도지사는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8조” 로, “장비 등의 기준” 을 “장비기준” 으로, “관청” 을 “관청과” 로, “적정한 대행자” 를 “대행자” 로 한다.

제4조 중 “대행자의 대행기간 연장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에 위배되지 않는 한” 을 “대행자가 대행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대행기간을” 로 한다.

제6조를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(이하 “대행자”라 한다)를 <u>선정</u>시는 <u>공개모집</u>으로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 대행자</u>는 지역여건, 자동차대수, 대행자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·군별로 둘 이상의 대행자를 지정한다. 다만,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1개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③ <u>도지사가 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</u>는 대행기간 만료일 3개월 <u>이전까지</u> 지정신청 절차, 지정방법, 대행기간, 사업구역, 지정대상자 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자동차관리법</u>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<u>충청북도</u> -----.</p> <p>제2조(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) ① ----- ----- 선정하는 때에는 <u>공개모집의 방식</u>-----.</p> <p>② <u>도지사</u>-----.</p> <p>③ <u>도지사</u>----- ----- 전-----.</p>

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·군수(출자·출연기관을 포함한다)가 관할구역 내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업무를 직접 수행하고자 지정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제3조(대행자의 선정기준) 「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」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장비 등의 기준과 사업계획서,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, 등록 관청의 근접성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대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
제4조(대행기간)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, 대행자의 대행기간 연장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에 위배되지 않는 한 연장할 수 있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④ 도지사는 제2항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제3조(대행자의 선정기준) 도지사는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 
제8조----- 장비기준-----  
-----  
----- 관청과-----  
-----  
----- 대행자-----  
-----.

제4조(대행기간) -----  
-----  
----- 대행자가 대행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대행기간을 -----  
-----.

<삭 제>

## 관계법령

### □ 자동차관리법

제20조(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) ① 시·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·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(이하 “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”라 한다)를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09. 12. 29., 2013. 3. 23.>

②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,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③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봉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>

④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용 철형(凸形)을 관리하는 경우 도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, 유출(流出)하여서는 아니 된다.[전문개정 2009. 2. 6.]

### □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

제7조(지정신청 등) 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2. 18.>

1. 사업계획서
2. 사업장의 위치·시설개요

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의 편의 및 수요등을 고려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3. 1. 2., 2010. 2. 18.>

1. 사업장의 평면도와 시설의 명세서
2. 사업장의 용지 및 사무실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

③ 시·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④ 시·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업무개시일 및 사업구역을 정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하고,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2. 18.>[제목개정 2010. 2. 18.]

**제8조(시설기준)**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등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. <개정 2010. 2. 18.>

**제10조(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)**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에정일 30일전까지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2. 18.>

[전문개정 1999. 2. 19.] [제목개정 2010. 2. 18.]

**제11조(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등의 신분증)**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및 그 종사원은 등록번호판발급업무를 대행하는 때에는 별표 4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신분증을 달아야 한다. <개정 2010. 2. 18.>

[전문개정 1999. 2. 19.] [제목개정 2010. 2. 18.]

**제12조(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)** ① 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봉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정하는 등록번호판발급 및 봉인수수료(등록번호판의 가격 및 부착비용을 포함하며, 이하 “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”라 한다)를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2. 18.>

②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봉인을 받는 자 또는 소비자관련단체가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금액의 산출근거제시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명확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2. 18.> [전문개정 1999. 2. 19.] [제목개정 2010. 2. 18.]